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‘국가균형발전의 날’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(제2105669호, 2021. 10. 19. 공포). 이에 개정 법률이 위임한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사업들에 대한 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안정적인 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평가 전담 전문기관을 명시하고자 함.

나아가 중앙행정기관의 균형발전시책 업무를 지원하는 ‘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’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근거는 있으나, 출연금 지급 및 보조 등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인바,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동 개정안을 제안함.

3. 주요내용

가. “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일 지정 및 운영(안 제3조의2)”

- 1) 1월 29일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
- 2)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을 위한 행사개최 및 협조 사항 등 규정

나. “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기관 지정(안 제14조의2)”

1)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 평가기관으로 “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”을 지정
다. “국가균형발전 지원기관에 대한 출연 및 보조(안 제31조)”

1) 중앙행정기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·
운영 비용을 출연·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국가균형발전의 날)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매년 1월 29일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, 관계 행정기관의 장, 공공기관의 장 또는 균형발전과 관련된 기관·단체 등에게 행사의 실시에도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4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(이하 “전문평가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지정한다.

제3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2(국가균형발전의 날) ①</u> <u>법 제3조의2에 따라 매년 1월 2</u> <u>9일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한</u> <u>다.</u> <u>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</u> <u>가균형발전의 날을 기념하기 위</u> <u>한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</u> <u>며, 관계 행정기관의 장, 공공기</u> <u>관의 장 또는 균형발전과 관련</u> <u>된 기관·단체 등에게 행사의</u> <u>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</u> <u>수 있다.</u>
제14조의2(평가자문단의 설치 등) ① ~ ③ (생략) <u>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</u> <u>균형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</u> <u>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법 제9</u> <u>조제3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</u> <u>(이하 “전문평가기관”이라 한</u> <u>다)을 지정한다.</u> ⑤·⑥ (생략)	제14조의2(평가자문단의 설치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법 제</u> <u>9조제3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</u> <u>(이하 “전문평가기관”이라 한</u> <u>다)으로 「산업기술혁신 촉진</u> <u>법」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</u> <u>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지정</u> <u>한다.</u> ⑤·⑥ (현행과 같음)
제31조(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) ① ~ ④ (생략)	제31조(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
범위 내에서 국가균형발전지원
센터의 설치·운영에 드는 비용
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
나 보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3 - 4419